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가합511677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한화건설

피고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9. 21.

판결 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452,350원 및 그 중
가. 1,105,91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79,542,35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0. 7. 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중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2,427,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7. 5.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와 A는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고, 2012. 3. 14.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11,383,3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선급금보증서의 교부

A는 2012. 3.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045,629,863원으로, 보증기간은 2012. 3. 14.부터 2012. 12. 31.까지로,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14. A에게 선급금 99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

A는 2012. 2. 3.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116,542,350원으로, 보증기간은 2010. 7. 5.부터 2013. 12. 31.까지로,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1) A는 2012. 6.경부터 경영 악화로 장비대금과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8. 3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공기지연을 우려하여 A에게 공사 수행을 재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A는 2012. 9. 25.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9. 28.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A에게 도달하였다.

마.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1)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 타절정산금액은 9,072,250,000원이고, 잔여 공사비는 2,311,100,000원(= 계약금액 11,383,350,000원 - 타절정산금액 9,072,250,000원)이다.

2) 원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정풍개발(이하 '정풍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계약금액은 3,048,1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10. 1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차 하도급하였다.

바. 원고의 보증금 청구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선금금보증금 368,910,000원과 계약이행보증금 67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금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9.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갑 제6, 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금금보증계약약관 제1조가 "피고는 A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선금금채무(선금금 반환채무가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액(외화보증금액이 병기된 경우에는 원화보증금액을 적용합니다)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지급기성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선금금 중 A가 반환해야 할 선금금이 368,9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금금보증계약에 따라 선금금보증금 368,91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금청구권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항변한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적용되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2. 12. 3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6. 3.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9. 1. 피고에게 선급금보증금 368,910,000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갑 제9, 10,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자료로 A 계약 관련 서류, 기성금 관련 서류, 선급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사 자료로 공사계약변경계약서(2012. 2. 2.), 후속업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12. 10. 11.), 계약내역비교표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위 자료를 재차 요청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2015. 11. 16.까지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 인정할 수 없는 금액 및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A 사이에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9. 1. 피고에게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한 것은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선급금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및 심사를 거친 후 2015. 12. 4.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가 한 최고의 효력은 2015. 12. 4.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까지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 소는 2015. 12. 4.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2014. 9. 1.자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 지급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통보하였다. 이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선급금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선급금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A의 공사포기 각서 제출 당시 원고와 A가 A는 자기 소유인 가설자재를 공사현장에 그대로 두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고는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보증금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A와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9, 10,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과 구분하여 선급금보증금 지급거절의 뜻을 명확하게 통보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함께 청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A(주) 계약 및 선급금 이행보증금 추가 심사자료 송부(갑 제18호증)"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내용으로 2015. 11. 6. "이행보증금 청구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건에 대한 의견(갑 제9호증)"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구분하여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피고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12. 4. 최종적으로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모두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의 2015. 6. 9.자 공문(을 제2호증)은 A가 공사자재를 현장에 그대로 놓아두는 조건으로 원고가 계약이행보증금청구를 포기한 것이니 보증금에 대하여 원고가 시공사인 A와 먼저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선급금보증금 지급을 명확하게 거절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청구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건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공문(갑 제9호증)을 보내면서, "4. 원고는 본 공문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원금에 더하여 2015. 11. 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73,776,842원을 청구하오니 원금 및 이자를 조속히 지급해 주시길 바라며,"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 지연이자는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청구일인 2014. 9. 1.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2015. 11. 6.자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2015. 11. 16.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구분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16.까지 보증금지급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A에게 A와 원고 사이에 있었던 공사타절 합의사항 등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 36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한 후 보증금 결정에 필요한 상당 기간(보증금 청구일인 2014. 9. 1.부터 청구서 송달에 필요한 3일, 보증금 심사에 필요한 14일)이 경과한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A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9.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원고와 A는 각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VAT 포함)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38,335,000원{=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1,383,350,000원 × 10%}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은 1,116,542,3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손해배상액과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인 1,116,542,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A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9.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한 A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와 정품개발과 새로 체결한 공사계약상의 공사비 차액인 737,000,000원(= 정품개발과의 계약에 따른 공사비 3,048,100,000원 -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잔여 공사비 2,311,1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은 1,116,542,3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손해배상액과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인 73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와 A는 2012. 9.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 합의를 하면서, A가 자기 소유인 가설자재를 공사현장에 그대로 두어 원고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737,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6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67,000,000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정품개발과 새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는 A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이 아닌 부분에 관한 대금 62,116,445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A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9.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이 1,116,542,35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갑 제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원고와 A는 각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VAT 포함)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약관 제1조가 "① 피고는 A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외화보증금액이 병기된 경우에는 원화보증금액을 적용합니다)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지체상금약정액은 제외)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가 정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38,335,000원(=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1,383,350,000원 × 10%)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손해배상액과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인 1,116,542,3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2. 9. 25. A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 합의를 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A의 대표이사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가설자재의 가격이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손해액에 비교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다. 또한 합의의 상대방이라는 원고의 D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포기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116,542,350원 및 그 중 73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한 후 보증금 결정에 필요한 상당 기간(보증금 청구일인 2014. 9. 1.부터 청구서 송달에 필요한 3일, 보증금 심사에 필요한 14일)이 경과한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379,542,350원(= 1,116,542,350원 - 73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민석

판사김건우

판사지혜선